

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8. 9. 12.(수) 09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효성 위 원 장
허 욱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표철수 상임위원 (1인)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○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차기회의에서 접수하기로 함

⑤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견

○ 국회의 2018년도 제39차 전체회의 비공개안건의 회의록 및 속기록 제출 요구와 관련,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음영 처리 한 후 열람형식으로 자료를 제출 하는 것으로 의결함

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

○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7. 의결사항

가. 「전파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8-50-449)

- ‘「전파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’에 대하여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 -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「전파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함

※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

- 현행 전파법 시행령은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,
- 방송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,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

나. 라디오방송국(FM) 신규허가에 관한 건 (2018-50-450)

- ‘라디오방송국(FM) 신규허가에 관한 건’에 대하여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 - (재)극동방송과 (재)기독교방송이 각각 신청한 전북FM방송국과 광주음악FM방송국에 대해 신규허가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,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통부의 기술심사도 충족하였으므로 허가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※ 허가 유효기간은 최초 허가인 점과 준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허가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

8.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9월 19일(수)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0:07)